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74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이학영 · 염태영 · 김현정
박희승 · 강준현 · 김영배
박민규 · 한민수 · 김상욱
박정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입지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나아가 매립시설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가 허가 취득 후 단기간 내 수익을 거둔 뒤 고의로 부도 또는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발생한 바 있음.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과정에서도 환경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갈등과 불신을 누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 받은 행정청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최종처분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사업계획 검토의 객관성

을 제고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반입폐기물의 종류, 환경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에 책임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제25조의5 신설 및 제31조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을 “시설·장비·기술능력과 재무능력(최종처분업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시설·장비·기술능력과 재무능력(최종처분업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시설·장비·기술능력과 재무능력(최종처분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25조의5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사업계획 반영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서 또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의 변경 또는 시설의 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②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등 운영정보와 함께 공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개대상 운영정보, 공개 방식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개 방식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제66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의 의견청취 및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생략)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도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3. ----- <u>시설·장비·기술능력</u> 과 재무능력(최종처분업만 해당한다)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 ⑰ (생략)

<신설>

만 해당한다) -----

-----.

④ ~ ⑰ (현행과 같음)

제25조의5(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업을 하려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를 제
출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대상사업의 시행으
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
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
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의 변경 또는 시설의 용량이 10
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변경계획서를 제
출하는 경우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생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

②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등 운영정보와 함께 공개해야 한다.

③ -----

-----, -----
공개해야 한다.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⑧ 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와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 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3. (생략)

<신설>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공개대상 운영 정보, 공개 방식 등 필요한 사항-----.

⑨ -----, 공개 방식 등 필요한 사항-----.

<삭제>

제66조(벌칙) -----

-----.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4. ~ 19. (생 략)	14. ~ 19. (현행과 같음)
-----------------	--------------------